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3079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4일

서울특별시

☐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: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(0.16km²)

○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60,512.6	신규
서울특별시	서대문구	홍제동 9-81 일대	119,237.1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	동작구	사당동 63-1 일대	41,275.5	

○ 지정기간: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

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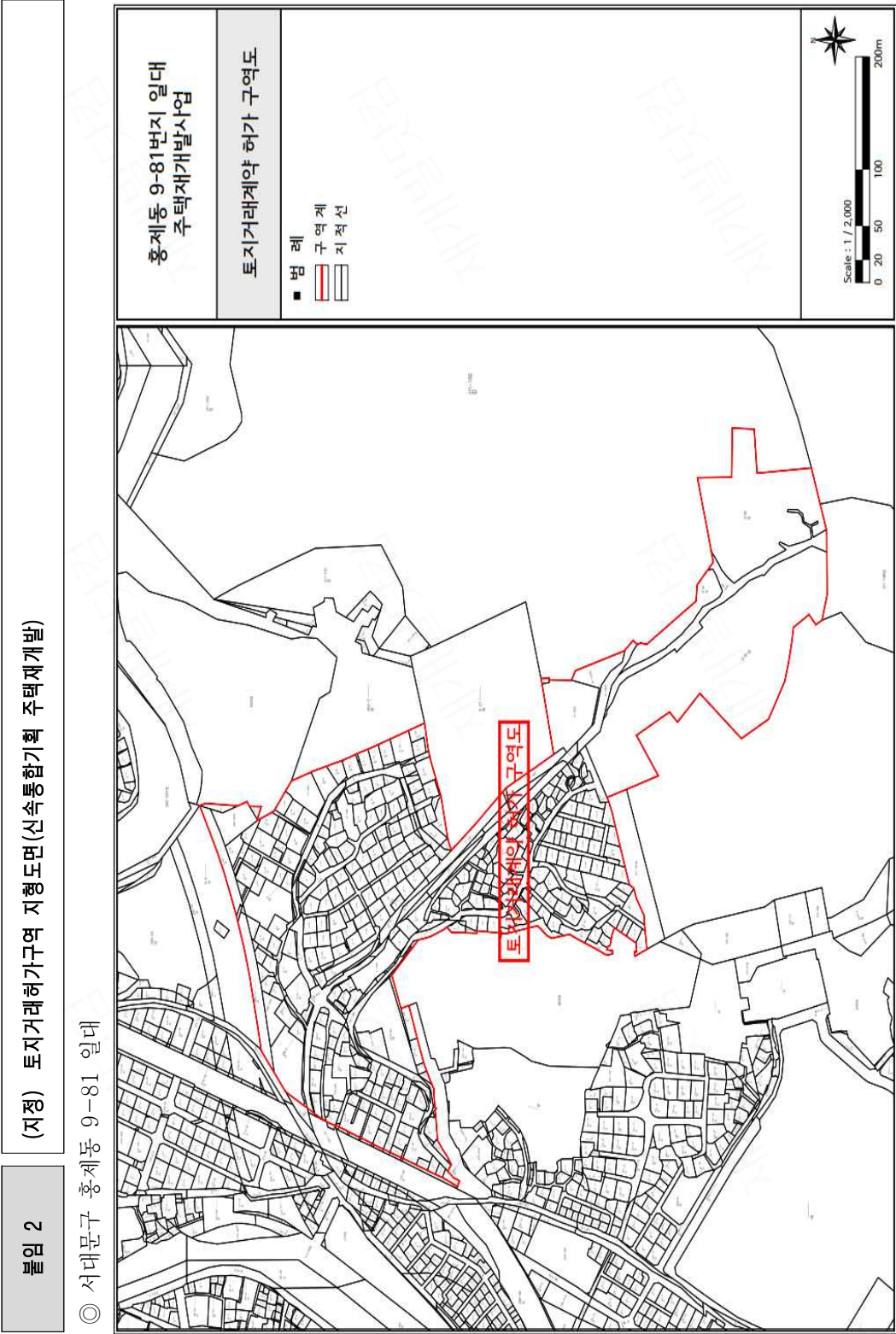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☐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붙임1 참조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

☐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

◎ 동작구 사당동 63-1 일대

